

[논평]

홍콩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 앞에서, 홍콩의 청소년들을 지지하며...

지난 4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직선제 보통선거를 지지하며, 권력 앞에 쓰러진 시민 동료에 대한 진정한 우애를 보여준 홍콩의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전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6년 서울의 거리에서 촛불에 불을 밝혔고,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삶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홍콩의 청소년들에게 지지를 표한다. 또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억압에 맞선 그들의 동료애와 용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믿으며, 세계 어디에서든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는 현장에 청소년이 있음을 이번 홍콩 시위를 통해서도 재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을 이어갈 홍콩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열렬한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낸다.

중국 정부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일국양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므로 시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과 체포, 구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는 중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견해를 밝히고

이러한 견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의 자유(제14조), 집회의 자유(제15조)가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을 고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되고,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구금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된다(제37조). 중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홍콩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역사에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질지 고민하고 또 조심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가까운 이웃 도시에서 일어나는 엄중한 인권침해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 시민의 목소리와 양심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부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더이상 모른척하지 말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입장을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

2019년 11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